

부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8월 22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8월2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 제안이유

- 동조례는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2. 1(조례 제1612호)자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903, '98. 10. 1) 및 「제2의견국운동지원단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386호, '97. 7. 5)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도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상위법 폐지에 따른 동조례 폐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없음	<input type="radio"/>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없음

나. 반대토론

없음

5. 심사결과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부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

의안 번호	제171호
의결 년월일	2003. 9. 3 (제106회)

제출년월일 : 2003. 8. 22.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견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8. 12. 1(조례 제1612호)자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폐지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03. 6. 23일 공포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동조례 폐지”

□ 첨부

- 부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

부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1998. 12. 1 조례 제1612호]

개정 1999. 3. 30 조례 제1635호

1999. 7. 29 조례 제1674호

제1조(목적)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제2의견국범국민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2의 건국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개혁과제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정부에서 확정된 개혁과제중 시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4. 제2의 건국과 관련한 국민운동의 지원 및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부의장, 상임위원장
2. 시의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국장, 경찰서 경무과장등 제2의 건국추진과 관련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 및 국민운동 추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둘 수 있다.

제4조(임기)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또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서기는 위원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2(상임위원회) 위원회에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998. 12. 1 조례 제1612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30 조례 제1635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9 조례 제167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